

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932호 2013. 4. 16(화)

◀ 고 시 ▶

○포항 도시관리계획(학교-조성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2013-50호) 2

◀ 공 고 ▶

○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(제2013-19호) 5

○공 인 공 고(제2013-778호) 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3 - 50호

포항 도시관리계획(학교-조성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46-1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(학교-조성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.

2013년 4월 12일

포 항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준비에 관한 계획으로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가. 공공·문화체육시설 - 학교(선린대학교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4	대학교	선린 대학교	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	87,311	감 48	87,263	경북고 제288호 (2001.9.25)	구역변경없이 지적분할 결과에 따른 변경

나. 세부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【기정】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82,909		82,909	100.0	
기정	1	도 로	전지역	8,806		8,806	10.6	
기정	2	주차장	초곡리146-1,30,26-1	6,263		6,263	7.6	
기정	3	선린광장	" 146-1	2,023		2,023	2.4	
기정	4	대운동장	" 145-1	8,590		8,590	10.4	
기정	5	교사대지	전지역	40,754		40,754	49.1	
기정	6	녹 지	전지역	12,267		12,267	14.8	
기정	7	기 타	초곡리 1006	4,206		4,206	5.1	

【변경】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세부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82,909	증 4,354	87,263	100.0	
변경	1	교육기본시설	초곡리 146-1	29,787	감 154	29,633	34.0	
변경	2	지원시설	" 145-1	25,260	증 6,941	32,201	36.9	
변경	3	부속시설	" 34	2,583	증 451	3,034	3.5	
변경	4	도 로	" 146-1	8,806	증 23	8,829	10.1	
변경	5	녹 지	" 산38-34	16,473	감 2,907	13,566	15.5	

다.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결정(변경)내용	변 경 사 유
	선린대학교	A=87,311 m ² →87,263 m ² (감 48 m ²)	• 구역변경없이 지적분할 결과에 따른 변경
1	교육기본시설	A=29,787 m ² →29,633 m ² (감 154 m ²)	• 세부시설 명칭변경 : 7개시설 → 5개시설 : 대학설립.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라 일괄 변경 • 학교시설로 추가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 시설배치결과 부분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부시설을 변경하고 •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변경하고자 함.
2	지원시설	A=25,260 m ² →32,201 m ² (증 6,941 m ²)	
3	부속시설	A=2,583 m ² →3,034 m ² (증 451 m ²)	
4	도 로	A=8,806 m ² →8,829 m ² (증 23 m ²)	
5	녹 지	A=16,473 m ² →13,566 m ² (감 2,907 m ²)	

3.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: 실음 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466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 2013-19호

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04월 04일

포 항 시



○ 공고사항

면허번호	포항시 정치망어업면허 영일제5호	
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	정치망어업 (중형)	
어업권자	주소	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565번지
	성명	최천만
	주민등록번호	460823-1*****
어업면허기간	2003.05.14. ~ 2013.05.13.	
어장위치와 구역	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지선	
처분 내역	어업권 포기 (9.54ha)	
처분 년 월 일	2013.04.04.	
면허번호	포항시 정치망어업면허 포항제33호	
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	정치망어업 (중형)	
어업권자	주소	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98번길 (호미곶면 구만리 565번지)
	성명	최천만
	주민등록번호	460823-1*****
어업면허 기간	2013.04.04. ~ 2023.04.03.	
어장위치와 구역	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지선	
처분 내역	어업면허 (9.54ha)	
처분 년 월 일	2013.04.04.	

포항시공고 제2013 -778호

공 인 공 고

포항시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4.12

포 항 시 장

1. 재등록 및 폐기사유 : 공인 마모
2. 재등록 공인 사용개시일 및 폐기공인 폐기일 : 2013. 4.18
3. 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(붙임1)
4. 폐기 공인명 및 인영(붙임2)

재등록 공인명 및 인영(붙임1)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민 원 실 발 급 용 4 포 항 시 북 구 청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재등록 (종직인)
민 원 실 발 급 용 4 포 항 시 북 구 청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재등록 (횡직인)

 폐기 공인명 및 인영(붙임2)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민 원 실 발 급 용 4 포 항 시 북 구 청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폐기 (종직인)
민 원 실 발 급 용 4 포 항 시 북 구 청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폐기 (횡직인)